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0
----------	-----

제출년월일 : 199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능중 「국토이용계획안」에 대한 자문대상 범위를 확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건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기능 일부신설
 - 시장이 입안한 국토이용계획안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국토이용계획안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기능)위원회는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2조 (기능) (현행과 같음) 1. ----- 및 국토이용 계획안 2. (현행과 같음)